

무배당 KB손보 퇴직연금
이율보증형 보험 (신탁제공용)

약관

주식회사 KB손해보험

제1편 계약의 성립 및 유지에 관한 사항

제1조 (용어의 정의)

- ①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탁업자’라 함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법’이라고 합니다) 제29조 제2항에 의해 신탁계약의 방법으로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신탁회사를 말합니다.
 2. ‘보험료’라 함은 신탁업자가 보험계약자로서 납입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및 퇴직연금감독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2조 (보험기간)

이 계약의 보험기간은 회사의 승낙이 이루어진 때부터 해지일까지의 기간으로 합니다.

제3조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

이 계약의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고 합니다),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이하 ‘수익자’라고 합니다)는 신탁업자로 합니다.

제4조 (신탁업자의 수행업무)

- ① 신탁업자는 운용관리기관이 전달한 가입자 또는 사용자의 운용지시에 의해 이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② 신탁업자는 이 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정보를 회사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제5조 (회사의 수행업무)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1. 보험료의 수령
2. 해약환급금의 지급
3. 기타 필요한 사항

제6조 (계약의 성립)

-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 ② 회사는 계약이 성립된 경우 지체없이 보험증권을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다만, 전문을 통한 전자적 거래시에는 보험증권을 교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7조 (보험약관의 교부 및 설명의무 등)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한 경우 계약자에게 이 약관을 전달하고 이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합니다. 다만, 통신판매 계약은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등을 광기록매체 및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하고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전달한 것으로 보며,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하여 계약자가 사이버몰(「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이버몰을 말합니다)에서 확인한 때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제8조 (보험료의 납입)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부터 이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 의무를 부담합니다.

제9조 (배당금의 지급)

이 계약은 무배당 보험으로 배당금이 없습니다.

제10조 (소멸시효)

계약자의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 등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제2관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제11조 (계약의 해지)

-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계약 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12조 (해지시 구비서류)

제11조에 의한 해지시 계약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해지 청구서(회사양식)
2. 기타 회사가 해지 등에 필요하여 요청하는 서류

제13조 (해약환급금)

- ① 이 약관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적립금 산출방법서(이하 “산출방법서”라 합니다)에 따라 계산합니다.
- ② 이율보증형 단위보험이 이율보증기간이 지나기 전에 해지되는 경우, 회사는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하여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 ③ 제2항의 중도해지이율은 해당 단위보험 설정일로부터 해지시점까지의 경과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적용합니다.
 1. 이율보증형 1년
 - 가. 경과기간 6개월 미만 : 이율보증형 적용이율 $\times$ 80%
 - 나. 경과기간 6개월 이상 : 이율보증형 적용이율 $\times$ 90%
 2. 이율보증형 2년
 - 가. 경과기간 12개월 미만 : 이율보증형 적용이율 $\times$ 80%
 - 나. 경과기간 12개월 이상 : 이율보증형 적용이율 $\times$ 95%
 3. 이율보증형 3년
 - 가. 경과기간 18개월 미만 : 이율보증형 적용이율 $\times$ 80%
 - 나. 경과기간 18개월 이상 : 이율보증형 적용이율 $\times$ 90%
 4. 이율보증형 4년
 - 가. 경과기간 12개월 미만 : 이율보증형 적용이율 $\times$ 60%
 - 나. 경과기간 24개월 미만 : 이율보증형 적용이율 $\times$ 70%
 - 다. 경과기간 36개월 미만 : 이율보증형 적용이율 $\times$ 80%
 - 라. 경과기간 36개월 이상 : 이율보증형 적용이율 $\times$ 90%
 5. 이율보증형 5년
 - 가. 경과기간 12개월 미만 : 이율보증형 적용이율 $\times$ 50%
 - 나. 경과기간 24개월 미만 : 이율보증형 적용이율 $\times$ 60%
 - 다. 경과기간 36개월 미만 : 이율보증형 적용이율 $\times$ 70%
 - 라. 경과기간 48개월 미만 : 이율보증형 적용이율 $\times$ 80%
 - 마. 경과기간 48개월 이상 : 이율보증형 적용이율 $\times$ 90%

6. 이율보증형 7년

- 가. 경과기간 18개월 미만 : 이율보증형 적용이율 $\times$ 50%
- 나. 경과기간 36개월 미만 : 이율보증형 적용이율 $\times$ 60%
- 다. 경과기간 54개월 미만 : 이율보증형 적용이율 $\times$ 70%
- 라. 경과기간 72개월 미만 : 이율보증형 적용이율 $\times$ 80%
- 마. 경과기간 72개월 이상 : 이율보증형 적용이율 $\times$ 90%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한 특별중도해지의 사유로 해지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1. 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합병, 영업양도로 인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해지를 요청한 경우
2. 사용자가 파산 또는 폐업된 경우
3. 관련 법령 등에 의하여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4. 가입자가 퇴직하는 경우
5. 수수료를 납입하기 위하여 적립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각하는 경우
6. 가입자가 법상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로 인하여 중도인출 하는 경우
7. 가입자가 확정기여형제도로 변경하는 경우
8.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9. 상기 각호의 사유 이외에 전출입 등 가입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제14조 (해약환급금의 지급)

- ① 회사는 해약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자의 청구에 따라 계약자에게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② 회사는 계약자의 해약환급금 지급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영업일 이내에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③ 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내에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급기일부터 7영업일 이내에 지급지연 사실을 계약자에게 통보하고 그 지급기일까지 계산된 금액에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적용이율 + 1%로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관련 법령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3관 단위보험의 운용에 관한 사항

제15조 (단위보험)

- ① 이 계약에서 “단위보험”이라 함은 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별로 설정된 구좌를 말합니다.
- ② 각 단위보험마다 설정된 보증기간을 “이율보증기간”이라 하며, 각 단위보험의 이율보증기간은 1년, 2년, 3년, 4년, 5년 또는 7년으로 합니다.
- ③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시 각 단위보험별로 ‘별표’에서 정한 적용이율이 보증되며, 회사는 이 계약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적립금을 계산합니다.
- ④ 계약자는 이율보증기간 만기시점에 해당 단위보험의 적립금으로 새로운 단위보험을 설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항을 준용합니다.
- ⑤ 회사는 계약자가 이율보증기간 만기일까지 새로운 단위보험으로 운용지시를 하지 않는 경우 만기상환합니다.
- ⑥ 확정급여형의 경우 제4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이율보증기간 만기일까지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요청이 없는 경우 회사는 단위보험 만기일에 새로운 단위보험을 자동 설정하는 것으로 하며, 이

경우 새로운 단위보험에 적용될 적용이율은 직전 단위보험이 끝나는 날에 회사가 결정한 새로운 단위보험의 적용이율로 합니다.

제16조 (적용이율)

적용이율은 ‘별표’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가 결정합니다.

제4관 그 밖의 사항

제17조 (특별계정의 운용)

- ① 회사는 보험업감독규정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라 특별계정을 설정하여 이 계약의 보험료 및 적립금에 대해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기초하여 운용합니다.
- ② 퇴직연금 특별계정의 자산의 종류는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정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18조 (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9조 (조항해석 및 관할법원)

- ① 이 약관의 조항해석에 관하여 계약자와 회사의 의견이 상이할 경우 관련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와 회사가 협의하여 그 내용을 합리적으로 결정합니다.
- ② 이 계약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관할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6조의2에 따라 방문판매 및 유선·무선·화상통신·컴퓨터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을 통한 금융상품계약과 관련된 소는 제소 당시 금융소비자 주소를,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다만, 제소 당시 금융소비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20조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 내용이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21조 (면책)

-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의해 계약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사용된 확인수단(인감, 패스워드 등)이 사용자가 사전에 등록한 확인수단과 육안에 의하여 상당한 주의로써 동일한 것임을 확인한 후에 사용자로부터의 지시·청구·통지·신청 또는 정보를 수령하여 실시한 사무처리
 2. 계약자로부터의 지시·청구·통지·신청 및 정보제공과 관련된 내용의 오류, 지연
 3. 계약자의 지시에 기초한 사무처리
 4.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운용관리기관의 통지를 수행하지 못한 경우
 5. 계약자의 통지에 기초한 사무처리
 6. 계약자의 통지가 관련 법령에 저촉될 우려가 있어 회사가 수행을 거부한 경우
 7. 계약자의 통지지연 또는 누락

8. 기타 제1호 내지 제7호에 준하는 경우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0호)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 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22조 (약관의 변경 등)

- ①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의 고객창구와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에 비치 또는 게시합니다.
- ② 약관의 변경내용이 계약자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계약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30일전까지 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변경 전 내용이 기존 계약자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계약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 계약자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단순한 사항의 변경은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계약자가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직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④ 계약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직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⑤ 회사는 약관을 회사의 고객창구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계약자가 요구할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약관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⑥ 이 약관에서 정한 사항을 관련 법령에서 변경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기로 합니다. 이때, 회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로부터 10일내에 사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제2항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⑦ 계약자는 이 계약의 체결 또는 제2항에 의하여 변경내용을 통보받았을 경우 그 내용을 사용자 및 가입자에게 주지시켜야 합니다.
- ⑧ 계약자가 제2항의 계약 변경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중도해지할 경우에는 제13조 제2항 및 제3항의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제23조 (관련법령 등의 준용)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보험업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처리합니다.

제24조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이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단, 확정급여형은 예금자보호법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별표]

적용이율 산출방식

이 계약의 적용이율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적용한다.

(1) 적용이율의 계산

가. 적용이율은 각 단위보험별로 단위보험 설정일에 아래의 방법에 따라 회사가 결정하며, 설정된 단위보험의 이율보증기간 동안 확정 적용한다.

회사는 매월 1일의 지표금리를 기준이율로 하며, 기준이율에서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하여 각 단위보험별로 단위보험 설정일에 적용이율을 결정한다. 다만, 시중금리 및 기타 투자환경의 급격한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기준이율을 재산출할 수 있으며, 적용이율은 산출기준이율의 80%를 최저한도로 한다.

나. 지표금리는 「국고채 수익률」, 「회사채 수익률」, 「지방채 수익률」을 가중평균하여 산출한다. 단, 산출된 지표금리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적용한다.

[이율보증형 1년 지표금리]

$$\bigcirc \text{지표금리}(\%) = A1 \times 0.7 + A2 \times 0.3$$

A1 : 국고채(3년 만기) 수익률의 평균값

A2 : 회사채(1년 만기, 무보증, AA-) 수익률의 평균값

[이율보증형 2년 지표금리]

$$\bigcirc \text{지표금리}(\%) = A1 \times 0.7 + A2 \times 0.3$$

A1 : 국고채(3년 만기) 수익률의 평균값

A2 : 회사채(2년 만기, 무보증, AA-) 수익률의 평균값

[이율보증형 3년 지표금리]

$$\bigcirc \text{지표금리}(\%) = A1 \times 0.7 + A2 \times 0.3$$

A1 : 국고채(3년 만기) 수익률의 평균값

A2 : 회사채(3년 만기, 무보증, AA-) 수익률의 평균값

[이율보증형 4년 지표금리]

$$\bigcirc \text{지표금리}(\%) = A1 \times 0.7 + A2 \times 0.3$$

A1 : 국고채(3년 만기) 수익률의 평균값

A2 : 지방채(4년 만기) 수익률의 평균값

[이율보증형 5년 지표금리]

$$\bigcirc \text{지표금리}(\%) = A1 \times 0.7 + A2 \times 0.3$$

A1 : 국고채(3년 만기) 수익률의 평균값

A2 : 지방채(5년 만기) 수익률의 평균값

[이율보증형 7년 지표금리]

○ 지표금리(%) = $A1 \times 0.7 + A2 \times 0.3$

A1 : 국고채(3년 만기) 수익률의 평균값

A2 : 지방채(7년 만기) 수익률의 평균값

주)

① 국고채수익률 :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국고채의 최종호가수익률의 평균값

② 회사채수익률 :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회사채의 최종호가수익률의 평균값

③ 지방채수익률 :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지방채의 최종호가수익률의 평균값

④ 평균값은 매월 1일부터 과거로 기산해서 7번째 영업일에서 16번째 영업일까지 10영업일 동안의 해당수익률을 산술 평균함

(2) 적용이율은 설정된 단위보험의 이율보증기간동안 적용한다.

(3) 이율체계에 급격한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회사는 금융감독원의 승인을 거쳐 적용이율의 산출방식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시점에 유지되고 있는 상품은 변경후 설정되는 단위보험부터 변경된 산출방식을 적용한다.

(4) 지표금리를 산출하는 시점에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최종호가수익률이 없는 경우에는 객관적이고 대표적인 시장지표가 되는 다른 수익률(예, 시가평가기준수익률 등)로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